

의안번호	2212482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5. 11. 12.
추 계 번호	25B46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와 동일하게 설정(321.92원/L)하여 지급할 경우, 5년간 8,952억 4,700만원(연평균 1,790억 4,9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의 50%로 설정(160.96원/L)하여 지급할 경우, 5년간 4,476억 2,300만원(연평균 895억 2,5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대, 원/L, L/대,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유가보조금 지원 (안 제50조 제5항)	시나리오 1	경유차량 대수 (대, A)	36,000	34,000	32,000	30,000	28,000	—	—
		지급단가 (원/L, B)	321.92	321.92	321.92	321.92	321.92	—	—
		대당 경유사용량 (L/대, C)	17,381	17,381	17,381	17,381	17,381	—	—
		합 계 (백만원 A×B×C)	201,430	190,240	179,049	167,859	156,668	895,247	179,049
	시나리오 2	경유차량 대수 (대, A)	36,000	34,000	32,000	30,000	28,000	—	—
		지급단가 (원/L, B)	160.96	160.96	160.96	160.96	160.96	—	—
		대당 경유사용량 (L/대, C)	17,381	17,381	17,381	17,381	17,381	—	—
		합 계 (백만원 A×B×C)	100,715	95,120	89,525	83,929	78,334	447,623	89,525

주: 1)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 및 방법, 유류세액 및 인하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유차량 대수 및 경유 사용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신 설> 3.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제공되는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량규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지급대상자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함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 (재정지원)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버스운송 사업 제공 차고지 설치사업에 대 한 국가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제공 차고지 설치사업의 규모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며, 국가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제5항 - 전세버스운송사 업자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	•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의 지급 단가 및 방법을 특정하기 곤란하나, 유사사례인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별¹⁾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1)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지급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CNG 유가보조금의 사례와 같이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의 50%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시나리오1)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와 동일하게 설정(321.92원/L)하여 지급
- (시나리오2)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의 50%²⁾로 설정(160.96원/L)하여 지급

[표 2] 현행법(제50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2025년 11월 현재 기준)

법적근거	연료유형	차종별	유류세 기준	유가보조금
현행법 제50조 제5항	경유	택시, 우등고속버스	475.87원/L	292.66원/L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183.21원/L)
		<u>노선버스</u> (일반고속버스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	<u>321.92원/L</u> 유류세 보조금 + 부가세 환급액(29.26원/L)
	LPG	택시, 노선버스	202.86원/L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	179.47원/L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과금-감면액
현행법 제50조 제6항	CNG	노선버스	61.54원/m ³	61.54원/m ³ (현재 유류세)
		전세버스	관세+개별소비세 + 수입판매부과금+부가세	30.77원/m ³ (현재 유류세 × 1/2)
현행법 제50조 제7항	수소	노선·전세버스, 택시		5,000원/kg(버스), 3,700원/kg(택시)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

자료: 국토교통부

□ 현행법 제50조제5항³⁾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 및 LPG 연료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차량 현황을 참고할 경우

- 2) 현행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급단가를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의 50%로 설정함
- 3) 법 제50조(제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금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LPG 등록차량의 수 및 운행실적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 파악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계함

[표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등록차량 현황(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사, 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등록 차량						
	총 대수	경유	LPG	CNG	수소	전기	기타
1,619	41,038	39,802	3	676	403	143	11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안 제50조제5항)
- 연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유차량 대수에 지급단가 및 연간 경유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함
 - 연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경유 유가보조금(원) = 경유차량 대수(대) × 보조금 지급단가(원/L) × 해당 연간 경유사용량(L/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유차량 대수) 국토교통부가 예측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경유차량 전망치⁴⁾를 적용하여 2030년 경유차량 대수가 2024년말 기준 차량대수(약 4만대)의 75% 수준(3만대)이 되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연간 2천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4) 정부(국토교통부 및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광역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25%를 수소버스(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경유차량 또한 현재 차량대수의 75% 수준(약 3만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조금 지급단가)
 - (시나리오1)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와 동일하게 설정(321.92원/L)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2)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의 50%로 설정(160.96원/L)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대당 연간 경유사용량)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4년 기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경유차량의 대당 연평균 경유사용량(17,381 L/대)⁵⁾을 적용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와 동일하게 설정(321.92원/L)하여 지급할 경우, 5년간 8,952억 4,700만원(연평균 1,790억 4,9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지급단가의 50%로 설정(160.96원/L)하여 지급할 경우, 5년간 4,476억 2,300만원(연평균 895억 2,500만원)으로 추계

[표 4]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대, 원/L, L/대,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	시나리오 1	경유차량 대수 (대, A)	36,000	34,000	32,000	30,000	28,000	-	-
		지급단가 (원/L, B)	321.92	321.92	321.92	321.92	321.92	-	-
		대당 경유사용량 (L/대, C)	17,381	17,381	17,381	17,381	17,381	-	-
		합 계 (백만원 A×B×C)	201,430	190,240	179,049	167,859	156,668	895,247	179,049
	시나리오 2	경유차량 대수 (대, A)	36,000	34,000	32,000	30,000	28,000	-	-
		지급단가 (원/L, B)	160.96	160.96	160.96	160.96	160.96	-	-
		대당 경유사용량 (L/대, C)	17,381	17,381	17,381	17,381	17,381	-	-
		합 계 (백만원 A×B×C)	100,715	95,120	89,525	83,929	78,334	447,623	89,525

주: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 및 방법, 유류세액 및 인하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유차량 대수 및 경유 사용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2024년 전세버스운송사업용 경유차량의 월평균 경유사용량(57,619,682 L) ÷ 월평균 운행대수(39,780 대) × 12개월 = 17,381 L/대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 및 방법, 유류세액 및 인하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유차량 대수 및 경유 사용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